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6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이기헌・박수현・채현일

박해철 • 김준혁 • 이해식

박희승 • 강준현 • 조인철

박선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또는 통지 유예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 단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83조의2·제83조의3 및 제104조).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를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으로,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5항가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가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과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정보제공요청서"를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로 한다.

④ 법원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⑤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를"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통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 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수사기관등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83조의2제5항"을 "제83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3조의2제6항"을 "제83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8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83조의2제6항"을 "제83조의2제6항"을 "제83조의2제6항"을 "제83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13호 중 "제83조제5항"을 "제8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83조제7항"을 "제83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②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 ③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u>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u>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 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 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 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 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 -----전기통 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 ④ 법원이 제3항에 따라 통신 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의 규정에 따른다.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 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 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 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

⑤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 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 청 허가청구서"라 한다)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 </u>	<u>제3항부터</u>
제5항까지	

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수 있다.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생 략)
-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⑦</u>
<u>স</u> া6 হুট্
<u>®</u>
<u>제6항</u>
,
<u>.</u>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

한다.

-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생 략)
 -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③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 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 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⑧ (생략)

<u>.</u>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통
지를
 1. ~ 5. (현행과 같음)
③ 수사기관등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소명자
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u>받아야 한다.</u>
$\underline{4}$ \sim $\underline{7}$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⑧ 제7항
<u>.</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 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

- 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 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83조의2제5항</u>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 3. <u>제83조의2제6항</u>에 따른 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 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 수 업무
- ② (생략)
- ③ 수사기관등은 <u>제83조의2제2</u> <u>항 및 제3항</u>에 따라 통신이용 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 ①
 1. (현행과 같음)
2. 제83조의2제6항
3. <u>제83조의2제7항</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83조의2제2</u>
<u>항부터 제4항까지</u>
④ (현행과 같음)
⑤
제83조의2제7항

\circ	경우	그 과학	·기술정	보통실	신부장
관의	의 수	심사를	받으민	<u> </u>	주민등
록투	법」	제303	스제1항	에 따	른 관
계	중앙	방행정/	기관의	장의	심사
를	거친	<u>.</u> 것으	로 본디	7.	

- ⑥ ~ ⑧ (생 략)
-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 전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 12. (생략)
 - 13. <u>제83조제5항</u>을 위반하여 관 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 추어 둔 자
 - 14. <u>제83조제7항</u>을 위반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 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 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5. ~ 17.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에 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5)	
⑥ ~ ⑧ (현행과 같음) 테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과 같음) ⑤	
⑥ ~ ⑧ (현행과 같음) 테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과 같음) ⑤	
⑥ ~ ⑧ (현행과 같음) 테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과 같음) ⑤	
⑥ ~ ⑧ (현행과 같음) 테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과 같음) ⑤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 같음) (5)	
⑤	
	과 같음)
	5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83조제6항</u> 14. <u>제83조제8항</u>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83조제6항</u> 14. <u>제83조제8항</u>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83조제6항</u> 14. <u>제83조제8항</u>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83조제6항</u> 14. <u>제83조제8항</u>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83조제6항</u> 14. <u>제83조제8항</u>	
13. <u>제83조제6항</u> 14. <u>제83조제8항</u>	
	13. <u>제83조제6항</u>
	14 제83주제8항
15. ~ 17. (현행과 같음)	15. ~ 17. (현행과 같음)